

## 공공 근로 관리국 계약 기관용 가이드

### 계약 기관의 책임

계약 기관(사법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주 부서, 기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
- 카운티, 도시, 타운 또는 마을
- 학군, 교육 위원회 또는 공동 교육 서비스 위원회
- 하수도, 수도, 화재, 개량 및 기타 지역구 공기업
- 공익 법인
- 공공 근로 계약을 체결한 공공 기관

공공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기관은 공공 근로 프로젝트에 고용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및 보조금을 열거하는 현행 요율표를 취득해야 합니다. 요율표를 취득하려면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임금 및 보조금 정보 요청" 양식(PW-39)을 공공 근로 관리국에 제출하십시오. 현행 요율표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양에 포함되어야 하고 공공 근로 계약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관은 법에 따라 다음 정보를 담당 근로 관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하청업체의 이름과 주소
- 계약이 체결된 날짜
- 계약의 대략적 달러 가치

이 노동법 조항의 준수를 돕기 위해 노동부의 "계약 체결 통지서" 양식 (PW-16) 사본은 원래의 현행 요율표에 포함되어 있고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관은 공공 근로 프로젝트의 완료 또는 취소를 담당 근로 관리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프로젝트 완료/취소 통지서" 양식(PW-200)은 원래의 현행 요율표에 포함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시간

공공 근로 프로젝트 수행에 종사하는 하청업자 또는 하도급업체를 고용한 근로자, 작업자 또는 기계공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이상 또는 주 5일 이상 근무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요율표

계약 기관은 모든 주요 하청업체에 현행 요율표의 완전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후 각 하청업체에 사본을 제공하고 요율표가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부 장관은 현행 요율을 매년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당해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할당된 모든 현행 요율표는 7월 1일부로 새로 결정된 연간 요율로 자동 업데이트됩니다.

연간 결정 및 업데이트된 할당된 현행 요율표는 노동부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labor.ny.gov](http://www.labor.ny.gov)

### OSHA 10시간 코스

\$250,000 이상의 공공 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는 이 안전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요구 사항의 조항은 입찰 및 계약 서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급여 및 급여 기록

모든 하청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원래 급여 또는 내역서를 구독 및 확인된 그대로 보관해야 하며 위증 시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급여는 최소한 공공 근로 프로젝트에 고용된 각 개인에 대해 다음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 이름
- 사회보장번호(마지막 4자리)
- 근로자가 고용된 분야
- 지급되는 시간당 임금
- 지급 또는 제공되는 보조금
- 각 분야에서 근무한 일일 및 주간 시간

모든 하청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최초 급여 지급 후 30일 이내에 그리고 그 후 30일마다 한 번씩 원래 급여의 사본을 구독 및 확인된 그대로 계약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위증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급여 제출은 지불 조건입니다. 주 하청업체는 하도급업체에 의한 현행 임금 또는 보조금의 미달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모든 하청업체 또는 하도급업체는 공공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현행 효율표의 사본을 해당 하도급업체에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 기관은 근로 완료일로부터 5년 동안 급여 기록을 수집 및 유지해야 하고, 인증된 급여를 수집하고 유효성을 검토할 책임이 있는 고용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계약 기관은 노동 관리국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원천징수하고 보유해야 합니다. 자금은 노동 관리국이 고지할 때까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정보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888-469-7365**  
[www.labor.ny.gov](http://www.labor.ny.gov)